

##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9-37
----------	--------

제출일자 : 1999. 8. 13.

제 출 자 : 거 창 군 수

### 개정이유

- 자치역량 강화와 경쟁력 향상으로 일과 기능의 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정부의 2단계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공무원의 정원을 3개년에 걸쳐 감축하기 위함.

### 주요골자

- 지방공무원 601명의 정원중 57명을 감축한 총정원 “544명”으로 정원조례를 개정
  - 집행기관 : 533명 ( 589명 ⇒ △ 56명)
  - 의회사무기구 : 11명( 12명 ⇒ 기능직 △1명)
- 년도별 감축인원은 '99년, 2000년, 2001년도에 각각 19명씩 분할하여 감축

### 개정근거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 규정 제21조
- 행정자치부 및 경상남도 개정조례 표준안

#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589명”을 “533명”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12명”을 “11명”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7월31까지는 별표1을, 2001년 7월 31까지는 별표 2를 각각 적용한다

[별표 1]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표

구 분	정 원
정원의 총수	582명
1. 집행기관의 정원	571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1명

[별표 2]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표

구 분	정 원
정원의 총수	563명
1. 집행기관의 정원	552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1명

제3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 별표1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19명(집행기관의 정원18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별정직의 경우는 2000년 6월 30일)까지, 별표 2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9명(집행기관의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1년 7월 31일(별정직의 경우에는 2001년 1월 31일)까지, 제2조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9명(집행기관의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2년 7월31일(별정직의 경우에는 2002년 1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직급별정원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칙 제2조 별표 2(2000년 감축) 및 제2조의 규정(2001년 감축)에 대한 본청 및 소속기관에 두는 직급별 정원은 매년 7월 31까지 정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원의 총수)군의 집행기관 및 의회사무기구 정원의 총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집행기관의 정원 : <u>589명</u></li> <li>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u>12명</u></li> </ol>	<p>제2조(정원의 총수)-----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집행기관의 정원 : <u>533명</u></li> <li>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u>11명</u></li> </ol>